

韓國書誌事業會規程

第1條 (名稱 및 設置)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以下 圖協이라 略稱한다)
定款 第27條 規程에 依據하여 韓國書誌事業會(以下
本會라 略稱한다)를 圖協內에 設置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韓國에서 刊行된 各種學術資料를 調査評價
하고 體系的으로 組織하여 學術文化的 研究 및 그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
業을 한다.

1. 韓國에서 刊行된 學術雜誌의 索引編纂
2. 韓國政府刊行物의 目錄編纂
3. 韓國에서 刊行된 圖書 및 非圖書資料의 調査評價
및 主題別書目 編纂
4. 韓國研究에 必要한 書目編纂
5. 國內外 關係機關과의 書誌情報 및 資料交換
6. 編纂된 書誌資料의 發刊 및 頒布
7. 資料複製 轉旋
8.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4條 (他機關과의 協力)

本會의 目的達成을 위한 事業과 同一한 또는 類似
한 事業을 他機關에서 計劃하고 遂行할 때에는 이에
協力하여 遂行토록 한다.

第5條 (組織)

本會는 다음의 任員으로 組織한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1名
3. 委員 若干名

第6條 (任員의 任免)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任免한다.

1. 會長
會長은 圖協會長이 된다.

2. 副會長

副會長은 圖協專門委員會 委員長이 된다.

3. 委員

委員은 資料種別 또는 主題分野를 勘案하여 會
長이 任免한다.

第7條 (任員의 任務)

本會의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理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에는 그 任
務를 代行한다.
3. 任員은 書誌資料의 評價, 書誌의 調査研究 및 編
纂을 한다.

第8條 (諮問委員)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諮問委員은 圖協 專門委員會 分科委員長, 斯
界의 專門家 및 學者中에서 會長이 委囑한다. 諮問
委員은 專門事項에 관한 諮問에 應하여 本會의 事業
을 돕는다.

第9條 (幹事 및 調査員)

本會의 事務를 處理하고 委員의 活動을 補佐하기
위하여 幹事 1名, 調査員 若干名을 둘 수 있다. 幹事
및 調査員은 圖協職員으로서 事務局長의 內申으로 會
長이 이를 任免한다.

第10條 (會議)

本會의 會議는 本委員會 및 委員과 諮問委員과의
合同委員會의 2 種으로 하되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會議는 委員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고 議事는 出
席者 過半數로서 決定한다.

附 則

本規程은 圖協理事會가 議決한 1968年 9月 6일부터
施行한다.

● 찾아 간 도서관 보람 찬 내 하루

● 봄비는 도서관 희망 찬 이 겨레

● 늘어 가는 도서관 줄어 드는 사회악